

제 호			
시설개수·개선 명령서			
업 소 소 재 지			
영업소명(상호)		영업의 종류	
영 업 주 성 명		생 년 월 일	
개 수 자 성 명		생 년 월 일	
시설개수·개선 명령사항			
시 설 개 수 · 개 선 사 항			
시 설 개 수 · 개 선 기 간	년 월 일 부터		
	년 월 일 까지		
귀 영업에 대하여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시설을 개수·개선할 것을 명합니다(기간 내에 개수·개선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). . . .			
시·도경찰청장 직인			